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41

발의연월일: 2021. 1. 21.

발 의 자:김민석·홍정민·한병도

민병덕 · 강병원 · 권칠승

진성준 • 박성준 • 이상헌

양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를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 또는 제작하거나 해당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및 축산물의 가공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	⑤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	1. <u>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u>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u>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u>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 또
<u>상영하거나</u> 인터넷에 게재하	는 제작하거나 해당 사진 또
는 행위. <u>다만, 동물보호 의식</u>	<u>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u>
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u>상영 또는</u>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	<u>다만, 동물보호 의식을</u>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된 홍보 활동 및 축산물의 가
	고 드